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440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3월 7일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에서는 감사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였으나, '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'는 현재 조문 내용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·감독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'할 수 있다'를 '하여야 한다'로 수정함 (안 제8조제4항).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제4항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수정(제안)안 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수탁자 선정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</p> <p>3. 공익단체에서 추천 한 자</p> <p>4. 그 밖에 법률전문 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. 다만, 위탁 신청자와</p>	<p>제7조(수탁자 선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 ----- 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사람</u></p> <p>3. ----- - <u>사람</u>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. -----</p>	<p>제7조(수탁자 선정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.</p> <p>④·⑤ (생략)</p> <p>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----- <u>범위</u> <u>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지도·감독 등)</p> <p>① 시장은 <u>수탁기관</u>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, 수탁자는 지도·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지도·감독 등)</p> <p>① ----- <u>수탁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8조(지도·감독 등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<u>수탁기관</u>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수탁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<u>수탁기관</u>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<u>수탁자</u> ----- ----- -----</p>	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<u>시장이 지정</u>한 「공인회계사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의회의 추천을 받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할</u> -----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의회의 추천을 받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하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회계감사 실시에 필요한 <u>사항은 시장이</u> 따로 정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9조(임원의 해임명령)</p> <p>① (생략)</p>	<p>----- <u>사항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」 제42조의2에 따라 시장---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임원의 해임명령)</p> <p>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	<p>----- <u>사항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」 제42조의2에 따라 시장--</u></p> <p>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임원의 해임명령)</p> <p>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수탁기관”을 각각 “수탁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시장이 지정한”을 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사항은 시장”을 “사항은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」 제42조의2에 따라 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수탁자 선정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</u>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<u>자</u> 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<u>자</u> 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<u>자</u>. 다만, 위탁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. <p>④·⑤ (생략)</p> <p>⑥ 선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</p>	<p>제7조(수탁자 선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사람</u> 3. ----- <u>사람</u> 4. ----- ----- ----- <u>사람</u>. ----- ----- -----.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에게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<p>----- <u>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</u> ----. ----- -----.</p>
<p>제8조(지도·감독 등) ① 시장은 <u>수탁기관</u>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, 수탁자는 지도·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지도·감독 등) ① ----- <u>수탁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<u>수탁기관</u>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<u>수탁자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<u>수탁기관</u>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	<p>③ ----- <u>수탁자</u>----- -----.</p>
<p>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이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<u>시장이</u> 지정한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<u>시의회</u>의 추천을 받은 -----</p>

